

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[2019. 2. 22 조례 제853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성인문해교육”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2. “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”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3. “문해교사”란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)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·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증평군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) ①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·문화적 기초 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.

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.

제5조(군수의 책무)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.)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실시
2.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
3.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·육성
4.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추진주체 등)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직접 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, 평생교육기관,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경비 지원)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성인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, 교구 등
2. 문해교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 등
3. 성인문해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등
4. 성인문해행사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,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
5.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, 홍보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
6.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,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, 문화행사 등의 사업
7.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「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문해교사 양성 등)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문해교사·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 등)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증평군 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